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7호

2024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도 제1회·제2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_구분모집	직급	선발예정인원 (명)	시험과목	
총 계		23개 직렬(31개 직류) *49개 단위		510		
제1회 임용 시험	소 계		17개 직렬(25개 직류) *37개 단위		461	
	공개 경쟁	행정 직군	행정직(일반행정)		22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행정직(일반행정)_장애인	9급	25	
			행정직(일반행정)_저소득층		8	
			세무직(지방세)	9급	1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세무직(지방세)_장애인		1	
			전산직(전산)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1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장애인		2	
			사서직(사서)	9급	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서직(사서)_장애인		1	
	속기직(속기)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기술 직군	공업직(일반기계)	공업직(일반기계)	9급	26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기계)_장애인		2	
			공업직(일반전기)	9급	1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전기)_장애인		1	
			공업직(일반화학)	9급	1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공업직(일반화학)_장애인		1	
			녹지직(산림자원)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직(조경)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직(보건)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직(식품위생)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간호직(간호)	8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_구분모집	직급	선발예정인원 (명)	시험과목		
		시설직(일반토목)	9급	3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일반토목)_장애인		3			
		시설직(일반토목)_저소득층		1			
		시설직(건축)	9급	2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건축)_장애인		3			
		시설직(건축)_저소득층		1			
		시설직(지적)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시설직(측지)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구과학, 측량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경쟁	기술직군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6	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해양수산직(선박항해)		2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해양수산직(선박기관)	1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의료기술직(의료기술)_방사선	9급	1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제2회	소 계	8개 직렬(10개 직류) *11개 단위		38			
제2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행정 직군	행정직(일반행정)	7급	5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력 경쟁	기술 직군	수의직(수의)	7급	6
	운전직(운전)	9급			8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기술계 고 졸	공업직(일반기계)		9급	2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공업직(일반전기)		9급	1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연구직	시설직(일반토목)	9급	3	필수(3) : 물리, 토목일반, 측량		
		시설직(건축)	9급	2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학예연구직(학예일반)_고고학	연구사	1	필수(3) :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3	필수(3) :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		
		환경연구직(환경)_대기	연구사	3	필수(3) :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환경연구직(환경)_수질	연구사	4	필수(3) : 환경공학,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기타	의무직	*1개 단위	5급	11	※ 별도 시험계획 공고	

※ 시험과목 중 **응용색 과목**은 '부산시 자체 출제(문제 비공개)', 그 외 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문제 공개)'

나. 출제범위 등

- 1) (9급 기술계고졸 경력경쟁) '물리'는 물리학 I,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2) (7급 공개경쟁) 행정학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3)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 직렬(직류)와 동일한 시험과목입니다.
- 4) **선택형 필기시험 출제 기준일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입니다.**

<선택형 필기시험 출제 기준일>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 (2024년 기준) 제1회 필기시험일 6.22.→기준일 4.30. / 제2회 필기시험일 11.2.→기준일 9.31.

다. 공통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2024년도부터 7급, 연구·지도사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
- 2) **거주지 제한**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참고사항>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 증명

- 3) **응시결격사유**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라.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_구분모집	직급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1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행정 직군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1·2·3급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장애인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저소득층		
		사서직(사서)	9급	·정사서 1·2급, 준사서	
		속기직(속기)	9급	·한글속기 1·2·3급	
	기술 직군	간호직(간호)	8급	·조산사, 간호사	
		시설직(지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시설직(지적)_장애인			
	경력 경쟁	기술 직군	해양수산업(일반수산)	9급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질병관리사
			해양수산업(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6급)
해양수산업(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6급)		
의료기술직(의료기술)_방사선			·방사선사		
제2회 임용 시험	경력 경쟁	기술 직군	수의직(수의)	7급	·수의사
			운전직(운전)	9급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기술계 고 출	기술 직군	공업직(일반기계)	9급	·특성하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직렬(직류)별 관련학과를 졸업(예정 포함)하고,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각급 대학 중퇴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졸업자는 졸업일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4.12.10.) 사이의 기간 1년 이내 *응시희망자는 2024.7.1.(월)~7.5.(금)까지 해당 학교 장 추천
			공업직(일반전기)		
			시설직(일반토목)		
			시설직(건축)		
	연구직	연구 직군	학예연구직(학예일반)_고고학	연구사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환경연구직(환경)_대기	연구사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환경연구직(환경)_수질		

※ 2024년부터 '전산직렬'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폐지되고,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전환

- 1)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요건이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 2) 원서제출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더라도,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합니다.
- 3)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하며, 필기시험 합격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자격(면허)증·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4) 연구직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5) 연구직 응시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관련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학위 취득>

- 대학(학부)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면 응시 가능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붙임4] 연구직 관련(계통) 학(학위) 증명서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 확인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해당시험의 응시원서 제출마감일(2024. 3. 29.) 현재 기준

- 1) 대 상 자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제출은 할 수 없음]
-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해당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일(2024. 3. 25.) 또는 제출마감일(3. 29.) 현재 기준

1) 대 상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제출일 또는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지원)이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유의사항>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급여(지원)가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수급자(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비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제출은 할 수 없음]

5)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발급>

- 발급처 : 주민등록 주소지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 인정증명서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 ※ 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발급담당자가 증명서에 수급기간(계시, 중단 이력 포함)을 명시하고, 담당자 성명·직급·확인(도장 또는 서명)·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문의 : 인사과 051-888-1972)

사. 기술계고졸(예정자 포함)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 상 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단,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2024. 12. 10.)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응시 가능**]

2) 해당 학교장 추천 시 추천대상자의 자격 기준(학력, 추천학과, 학과 성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학력 기준

-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각급 대학 중퇴자
※ 각급 대학 중퇴 여부는 '추천서 제출마감일(2024. 7. 5.)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가능

○ 추천학과 기준

- 아래 표의 선발 직렬(직류)별 관련학과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 직렬(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별표 2]의 '중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의 확인이 필요함

직렬(직류)	관련학과
공업직(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업직(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직(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설직(건축)	건축(건축설비)

○ 학과 성적 기준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참고사항>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全)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교에서 →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 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기술계고졸 구분모집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7.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 4) 지역요건은 학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거나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5) 응시대상자는 2024. 7. 1.(월)부터 7. 5.(금)까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는 원서제출 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학교장 추천 시 성적·졸업 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대상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 운전직류 응시대상자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4. 12. 10.) 현재 기준

- 1) 대 상 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2) 대형버스 규격
 -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르며,
 - ②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에 '대형승합'이라고 기재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

- 대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 (제외) 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등 대형승합이 아닌 차량

-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붙임5] 확인

<제출서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확인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경찰청발급)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붙임5]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운전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만으로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상세 안내 예정

1.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는 [붙임5] 서식으로 대형버스를 운전한 경력만 기재하여 발급
2.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5] 서식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기재내용이 누락될 경우 경력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붙임5] 서식을 사용하여 발급받을 것)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4. 군(軍) 복무기간 중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5.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軍)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6. 제출한 서류에 대해 '서류전형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별도로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 :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
 - ▶ 시작 10:00~종료 2과목(40분, 10:40), 3과목(60분, 11:00), 5과목(100분, 11:40)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1)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필기시험 합격에 따른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응시자격 요건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결정 등

- 1) 합격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하며,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공개경쟁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7급 공개경쟁은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3)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4)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성적 확인 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함)

3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제출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3.25.(월)~3.29.(금)	필기시험	5.24.(금)	6.22.(토)	7.19.(금)
		면접시험	7.19.(금)	8.12.(월)~8.23.(금)	9.13.(금)
제2회 임용시험	7.22.(월)~7.26.(금)	필기시험	10.4.(금)	11.2.(토)	11.20.(수)
		면접시험	11.20.(수)	12.9.(월)~12.10.(화)	12.20.(금)

※ 시험 일정은 시험 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함

4 응시원서 제출 (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 1) 제출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제출
 ※ 자세한 방법은 응시원서 제출 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제출 방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고객센터로 문의(1522-0660)
- 2) 제출시간 : 응시원서 제출기간 내 24시간 [단, 제출 시작일은 09:00부터, 제출 마감일은 18:00까지]
- 3) 응시수수료 : 8급·9급 5,000원,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참고사항 >

- 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추가 소요됨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 **해당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당시**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4년 추가
-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24년 추가<관계법규 개정 후 시행 예정>

- 면제방법 : 면제 대상자는 원서제출 시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추후 반환됩니다.**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 또는 필기시험 장소공고 시 안내 예정

5) 응시 취소기간(응시수수료 반환)

시험명	원서접수기간	취소기간	
		1차 취소	2차 취소
제1회 임용시험	3.25.(월) ~ 3.29.(금)	3.25.(월), 09:00 ~ 4.1.(월), 18:00	5.20.(월), 09:00 ~ 5.22.(수), 18:00
제2회 임용시험	7.22.(월) ~ 7.26.(금)	7.22.(월), 09:00 ~ 7.29.(월), 18:00	9.30.(월), 09:00 ~ 10.2.(수), 18:00

나. 원서제출 시 유의사항

- 1)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출 가능)
- 2) 부산광역시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중복 또는 복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3)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응시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최종 제출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함
- 4)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결제완료 이후 응시 직렬(직류)을 변경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5)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해당시험의 취소기간 및 별도로 지정된 추가취소기간 내에 취소하여야 함
- 6) 원서제출 시 등록하는 사진은 시험 시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사진파일(JPG 또는 PNG) :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dpi 이상
-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고, 배경이 없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본인 사진만 등록

- 7) 응시표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합니다.(재출력 가능)
- 8) 장애인·임신부는 원서제출 과정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제공 내용·신청 절차·제출서류 등은 [붙임2]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서 확인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7급~9급 공개경쟁에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선발(모집) 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다. 결정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 해당 성(性)의 응시자가 추가 합격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적용가산점 [붙임1] 확인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1개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나~마'에서 확인

나.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대 상 자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 ②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2) 가산점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참고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가점비율 등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본인이 사전 확인

다. 의사상자 등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대 상 자

- 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 ②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2) 가산점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득점에 각 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참고사항>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 확인

라. 자격증 소지자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1) 가산방법

-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득점에 각 과목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함]

2) 가산비율

① 행정직군

직렬(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직(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사회복지)	변호사	

② 기술직군(연구직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구 분	7급, 연구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참고사항>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붙임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확인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폐지된 자격증이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가산점이 적용되는 자격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가산점 등록기간 :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구 분	등록기간	등록방법
제1회 임용시험	2024. 6. 22.(토)~2024. 6. 24.(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local.gosi.go.kr)
제2회 임용시험	2024. 11. 2.(토)~2024. 11. 4.(월)까지	

- 3) 가산점 등록사항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산비율 등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4)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7

(7급 공채)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상세내용은 [붙임3] 확인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24. 11. 1.)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1)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 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텡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기준점수(일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기준점수(청각장애)	352점 이상	-	350점이상	204점 이상	-	375점 이상

2) 인정범위 : 2019. 1. 1. 이후 국내와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취득하여 확인이 가능한 시험만 인정합니다.

※ 외국 응시시험 : 토플<모든국가>, 토익<일본>, 지텔프<미국>

3) 사전등록 :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토플, 토익, 텡스, 지텔프)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하면 성적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24. 11. 1.)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1) 기준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2) 인정범위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gosi.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장소 안내,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gosi.busan.go.kr)에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휴대전화 문자 안내 등 별도의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 다.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하는 과목은 '공개'하고,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하는 과목은 '비공개'이며 문제지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는 자격증 정보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 기술계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학점은행제 등 포함)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아.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자.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 또는 16개 자치구·군(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포함) 및 구·군의회이며, 직렬(직류)별 결원 현황에 따라 본인의 희망기관(임용후보자 등록 시 5개 선택) 이외의 기관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차.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합니다.
- 카.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과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달라지는 주요시험제도 안내

구분	현행	변경	비고
< 2024년부터 시행 >			
7급 이상, 연구·지도직 응시연령 하향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응시(가능) 연령 : 전 직급 18세 이상 ※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3.1.)	'24. 시행 ('23. 사전예고)
전산직(9급)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특수직급으로 분류 ▶ 전산 관련 자격증이 응시 필요자격요건	가산대상자격증 신설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전환 ▶ (전산직류)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추가 ※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3.1.)	'24. 시행 ('23. 사전예고)
응시수수료 면제 및 반환 요건 확대	①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 ② 취소기간(원서접수 마감일 후 3일)까지 취소 시 반환	①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후 시행 ②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자율 조정 ▶ 응시 추가취소기간 신설(장소공고일 전) ※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3.9.)	'24. 시행
선택형 필기시험 출제기준일 변경	시험당일 현재 기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 ※ (인사혁신처) 2024년 달라지는 채용시험('24.1.)	'24. 시행
임용점검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규정 없음	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시험의 전 과정 점검 ※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3.9.)	'24. 시행
< 2025년부터 시행 >			
9급 시험의 국어·영어과목 출제기조 전환	지식암기식 평가	직무적합형으로 전환 ▶ 추론형, 현장 직무능력 중심 ▶ 민간 채용과 호환성 강화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지침('23.11.)	'25. 시행 ('23. 사전예고)
녹지직(9급)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별도 규정 없음	가산대상자격증 신설 ▶ (산림자원, 조경 직류) '나무의사' 자격증 추가 ※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3.9.)	'25. 시행 ('24. 사전예고)

- 붙임 1. 직렬(직류)별 가산 대상 자격증 안내 1부.
2.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3. [7급 공개경쟁]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1부.
4. [연구직] 관련(계통)학(위) 증명서 및 추천서(서식) 각 1부.
5. [운전9급]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서식) 1부.
6. 증빙서류 제출 봉투표지 1부. 끝.

※ 붙임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gosi.busan.go.kr)에서 본 공고문의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공고문 열람 게시판**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gosi.busan.go.kr),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임용시험 공고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바로콜센터 (120)**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051-888-1972, 1974, 1971)

▶ **원서제출 및 시스템(로그인, 결제 등) 이용방법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